

서울대학교 학칙

[시행 2026.1.1] [서울대학교학칙 제2627호, 2025.12.9,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880-50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서울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교수하며 사회의 각 부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연구를 진작함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조직의 설치) ① 대학,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부 및 학과(이하 "학과(부)"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의 일반관례, 사회적 수요 및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임교원 및 학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대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는 학과(부)·전공을 둔다. 다만,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첨단융합학부는 대학에 준하는 단위로 운영한다. [개정 2023. 8. 31., 2024. 9. 9.]

③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내에 동일 명칭의 학과(부) 또는 전공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④ 학과(부)에는 전공 또는 교과과정상 전공을 둘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내에 동일 명칭의 전공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⑤ 대학(원) 또는 학과(부) 내에 전공을 따로 두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한다. [개정 2024. 9. 9.]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학 시 모집단위가 아닌 교육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1. 3.]

제4조(학위과정의 설치 등) ① 학과(부) 또는 전공에 학위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성격과 본교의 교육목표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임교원 및 학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과정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원과정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6년제 학사과정의 경우,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④ 각급 학위과정에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제2항의 협동과정 및 제3항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의 경우, 총장은 그 운영실적을 매 2년 마다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계열별로 다음 각 호의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2. 29.]

1. 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2.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
3. 예·체능계열: 3편 이상

제5조(학위과정의 연계 및 통합) 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상호 연계된 학사·석사 연계과정과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② 학위과정으로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학사·석사통합과정”이라 한다)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사·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치의학대학원에 전문석사학위 과정과 학술박사학위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 복합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31.]

④ 학사·석사 연계과정,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학사·석사통합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 3.]

[전문개정 2013. 4. 24.]

제6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은 대학(원), 대학(원)의 학과(부) 또는 첨단융합학부에 소속된다.

[개정 2024. 2. 29., 2024. 9. 9.]

② 총장은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를 명할 수 있다.

③ 겸무교원의 인사와 교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교원 채용의 양성평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0. 7. 30.]

제7조(명예교수) 본교에 명예교수를 두며 추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년) 전임교원이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년 제도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2. 29.]

제9조(교과과정의 운영) ① 교과과정은 각 학과(부) 단위에서 종적으로 각급 학위과정 간에 일관성 있게 조정 운영되어야 하며, 횡적으로 각 학과(부)와 각 대학·전문대학원 또는 학부대학 간에 상호 조정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11., 2024. 9. 9.]

② 기초교양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이하 “공통교육과정”이라 한다), 학사과정 전공교과목 및 대학원과정의 교과목 중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공통교과목으로 정한 교과목(이하 “공통교과목”이라 한다)은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6. 11., 2024. 9. 9.]

③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 등의 위탁) ① 학사과정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등을 위하여 입학 후 일정기간 동안 학부대학 또는 타 대학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9.]

② 대학원과정의 교육 및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인사관리는 일반대학원의 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각 학장과 전문대학원의 원장(이하 “전문대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 다만, 대학원과정의 교육 중 제9조의 공통교과목 교육은 학부대학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2024. 9. 9.]

③ 학장은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에게 학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학(원) 간·학과(부) 간·부속시설 간 협조) ① 2개 이상의 학부·학과나 대학·전문대학원 또는 학부대학 간에 교과과정·인사·예산·시설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9. 9.]

② 2개 이상의 부속시설 간에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1절 총장·부총장

제12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13조(부총장) ① 총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육부총장, 연구부총장 및 기획부총장을 둔다.

- ② 교육부총장은 교무, 학생, 기초교육, 입학 및 학술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 3. 1., 2025. 12. 9.]
- ③ 연구부총장은 연구, 산학협력, 창업, 정보화 및 시흥캠퍼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 4. 1., 2020. 2. 27., 2022. 6. 8.]
- ④ 기획부총장은 대학운영의 기획·조정, 소통협력, 국내외 교류협력, 일반행정, 재정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 4. 1., 2025. 12. 9.]

제2절 교육조직

제14조(대학·대학원 등) ① 본교에 다음과 같은 대학을 둔다

- 1. 학부대학
- 2.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간호대학·경영대학·공과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미술대학·사범대학·생활과학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음악대학·의과대학[개정 2013. 4. 24., 2017. 10. 19., 2023. 8. 31., 2024. 9. 9.]
- ② 본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보건대학원·행정대학원·환경대학원·국제대학원·치의학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융합과학기술대학원·국제농업기술대학원·공학전문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을 둔다.[개정 2014. 6. 25., 2015. 10. 13., 2019. 12. 26., 2023. 8. 31.]
- ③ 대학 및 첨단융합학부에 별표 1의 학과(부) 또는 전공을 둔다.
- ④ 본교에 제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혁신공유학부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 3.]
- ⑤ 본 학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부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학생의 소속) ① 학사과정 학생은 규정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1개의 모집단위 또는 별표 1의 대학별 설치 학과(부)·전공에 소속되며, 대학원과정 학생은 별표 3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1개의 학과(부)·전공 또는 협동과정에 소속된다.[개정 2016. 9. 6.]

- ② 별표 2의 학부대학 광역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대학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학과(부)·전공을 선택한 이후 해당 학과(부)·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신설 2024 9. 9.]

제16조(학사과정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②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

제17조(대학원과정 입학정원) ① 대학원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 ② 대학원과정의 학생모집단위별 구분과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 다만, 모집인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대학원장) ① 일반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부총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 3. 1.]

- ② 대학원장은 일반대학원의 행정을 통할하고, 일반대학원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 운영을 담당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제10조에 따라 대학원과정의 학생교육을 학장, 전문대학원장 및 학부대학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해당 학

장, 전문대학원장 및 학부대학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0. 6. 11., 2024. 9. 9.]

제18조의2(학부대학장) [신설 2024. 9. 9.] ① 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며, 학부대학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부대학장은 본교 학사과정 공통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교수·학습 지원, 공통교과목 교육 등을 담당한다.

③ 학부대학장은 학부대학의 행정을 통할하고, 학부대학 학사과정 학생의 교육과 산하기구 운영을 담당한다.

④ 학부대학에 부학장 및 광역주임을 두되, 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교수로 겸보할 수 있다.

⑤ 부학장 및 광역주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부대학장을 보조한다. 다만, 학부대학장은 대학의 운영상 각 부학장 및 광역주임의 직무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교무부학장 : 교원 및 조교인사, 자유전공학부 입학·졸업·학적 등 교무에 관한 사항

2. 학생부학장 : 학생의 보건·후생·상벌·장학·동원·집회·훈련·병사 등 학생에 관한 사항

3. 교육부학장 : 학부대학 교육 운영·개발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획부학장 : 온라인 교육 및 교수·학습지원 전반, 홍보·대외협력 등 기획에 관한 사항

5. 광역주임 : 학부대학 광역 학생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⑥ 학부대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부학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학(원)장) ① 대학에 학장, 전문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학장 및 원장(이하 "학(원)장"이라 한다)은 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교수로 겸보할 수 있다.[개정 2024. 2. 29.]

② 학장은 그 대학의 행정을 통할하고, 학사과정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부설학교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 전문대학원장은 그 대학원의 행정을 통할하고, 대학원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 운영을 담당한다.

④ 대학에 부학장, 전문대학원에 부원장을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각각 4명 이내로 두되, 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교수로 겸보할 수 있다.[개정 2024. 2. 29.]

⑤ 부학장 및 전문대학원의 부원장(이하 "부학(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원)장을 보조한다. 다만, 학(원)장은 대학(원)의 운영상 각 부학(원)장의 직무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8.]

1. 교무부학(원)장 : 교원 및 조교 인사, 입학·졸업·학적·강좌·교과과정·수업·학점 등 교무에 관한 사항

2. 학생부학(원)장 : 학생의 보건·후생·상벌·장학·동원·집회·훈련·병사 등 학생에 관한 사항

3. 연구부학(원)장 : 학술연구,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연구시설 등 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획부학(원)장 : 발전계획 수립, 정보화, 홍보, 대외협력 및 교류 등 기획에 관한 사항

⑥ 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부학(원)장(경영전문대학원·공학전문대학원은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2. 8.]

⑦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첨단융합학부에는 학부장과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부학부장을 두되, 그 자격 및 직무 등은 각 대학의 학장 및 부학장에 준한다.[개정 2017. 12. 8., 2023. 8. 31., 2024. 9. 9.]

제20조(학장 및 원장의 선임) ① 각 대학에는 학장추천위원회를, 각 전문대학원에는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대학(원)에서 따로 정하되,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2명 이상의 학(원)장 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학(원)장이 연임으로 추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학(원)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60일에서 30일 사이에 후보를 추천한다.

⑤ 총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참고하여 학(원)장 후보 1명을 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원)장에 임명한다.

제21조 (학과(부)장 및 전공주임) ① 대학(원)의 학과(부)·전공에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을 두되, 교수 중에서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교수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② 대학과 대학원의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은 상호 견보할 수 있다.
- ③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부)·전공의 운영을 통할하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학생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학(원)장을 보조한다.

제22조(교수회) ① 대학과 전문대학원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 ②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원)장이 된다.
- ③ 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되, 재적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 ④ 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교수회는 해당 대학(원)의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과 학(원)장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칙·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4.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6. 각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7. 학부 또는 학과간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8.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9. 그 밖에 교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교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부속시설 및 부설학교

제23조(부속시설) ① 본교에 지원시설로 중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4. 9. 9.]

- ② 본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③ 본교에 연구시설과 부속시설을 두며, 각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에 각각 장을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으로 견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시설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⑥ 총장은 부속시설 중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매 3년마다 해당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와 존속 및 폐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중앙도서관)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견보한다.

- ② 중앙도서관장은 도서 및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③ 중앙도서관에 전문분야별로 분관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견보한다.
- ④ 중앙도서관 및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기초교육원) [삭제 2024. 9. 9.]

제26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부총장으로 견보하고, 산학협력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1. 3. 1.]

- ② 산학협력단에 연구정책부단장과 사업부단장을 두고 연구정책부단장은 연구처장으로, 사업부단장은 창업지원단장으로 각각 견보한다. [개정 2021. 3. 1., 2022. 6. 8.]

- ③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정책부단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운영본부장을 두며, 연구부처장이 겸보한다. [개정 2021. 3. 1.]
- ④ 산학협력단 업무는 연구처 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 ⑤ 산학협력단의 세부조직 및 운영, 감사의 선임 및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부설학교) ① 사범대학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초·중등학교를 설치·운영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두며, 교장은 해당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총장은 부설학교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총장은 이를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또는 부설학교진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④ 부설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학교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은 각 부설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7조의2(부설학교진흥원) ① 각 부설학교를 통할하기 위해서 부설학교진흥원을 둔다.

② 부설학교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설학교의 통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부설학교 교원 복무에 관한 사항
3. 부설학교 교원 급여 및 복지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부설학교 교육사업 및 장학에 관한 사항
5. 부설학교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부설학교 예산 및 시설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실습 지원, 현장교육 연구사업 등 초·중등 교육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부설학교진흥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두며, 원장과 부원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7.]

제4절 행정조직

제28조(처·국 등) ① 본교에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기획처, 국제처, 사무국, 시설관리국, 입학본부, 정보화본부, 시흥캠퍼스본부 및 창업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0. 2. 27., 2022. 6. 8., 2025. 12. 9.]

② 제1항의 조직에 두는 처장·부처장, 국장, 본부장·부분부장 등의 보임에 관한 사항과 그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처장을 둔다.

② 교무처장은 교원 및 조교의 인사, 학생교육, 국내 학술교류, 대학원 지원, 학적 및 수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교무처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무부처장과 교육부처장을 둔다.

④ [삭제 2024. 1. 1.]

⑤ [삭제 2024. 1. 1.]

제30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처장을 둔다.

② 학생처장은 학생지원, 학생소통, 복지 및 장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학생처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둔다.

제31조(연구처) ① 연구처에 처장을 둔다.

② 연구처장은 연구진흥정책 수립, 학술교류활동 지원, 연구소(원)의 설치 및 폐지 등 연구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연구처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둔다.

제32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처장을 둔다.

② 기획처장은 대학운영의 기획·조정, 대학재정, 법무, 대외협력, 홍보, 평가, 회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 1. 1.]

③ 기획처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획부처장, 협력부처장, 재정전략실장을 둔다.

④ [삭제 2024. 1. 1.]

⑤ [삭제 2024. 1. 1.]

⑥ [삭제 2024. 1. 1.]

제33조(국제처) ① 국제처에 처장을 둔다.

② 국제처장은 국제교류 및 외국인 교직원·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국제처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둔다.

[본조신설 2025. 12. 9.]

제34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직원인사 및 총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 1. 1.]

[제33조에서 이동 2025. 12. 9.]

제35조(시설관리국) ① 시설관리국에 국장을 둔다.

② 시설관리국장은 학교시설의 건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5. 12. 9.]

제36조(입학본부) ① 입학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② 입학본부장은 입학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입학본부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둔다.

[제35조에서 이동 2025. 12. 9.]

제37조(정보화본부) ① 정보화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② 정보화본부장은 대학정보화 종합 기획·조정,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전산망 구축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정보화본부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둔다.

제37조의2(시흥캠퍼스본부) ① 시흥캠퍼스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② 시흥캠퍼스본부장은 시흥캠퍼스 운영과 관련된 총괄적인 기획·조정, 재무관리, 신규 사업 발굴,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사업 유치, 시흥캠퍼스 관련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시흥캠퍼스본부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둔다.

[본조신설 2020. 2. 27.]

제37조의3(창업지원단) ①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둔다.

② 창업지원단장은 창업 관련 신사업 기획·발굴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본조신설 2022. 6. 8.]

제5절 위원회 등[제목개정 2019.6.12.]

제38조(기획위원회) ① 본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기획부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시설관리국장·기획부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20명 이내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교육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시설계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 ④ 기획위원회에 일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9조(교육위원회) ① 대학의 교육목표, 교육방향 등 교육활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총장, 학부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국제처장, 입학본부장, 교육부처장과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학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총장과 임명·위촉된 위원 중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2024. 9. 9., 2025. 12. 9.]

③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과과정의 기본 방향 및 정책 설정에 관한 사항
2. 입학정책 및 인재육성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12.]
3. 각급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편성원칙 및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별 교육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 ④ 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⑤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제40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교육부총장·연구부총장·기획부총장·학부대학장·학장·전문대학원장·학부대학 자유전공학 부장·첨단융합학부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처장·국제처장·입학본부장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된다. [개정 2020. 6. 11., 2023. 8. 31., 2024. 9. 9., 2025. 12. 9.]

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11.]

1.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교육 강화를 위한 입학, 학사과정과의 연계 문제, 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3.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 학위심사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 사항
5. 대학원과정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의 제도에 관한 사항
6. 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7. 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석사·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④ 대학원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 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⑦ 대학원 학사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각 대학(원)별로 대학원 학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교원인사위원회) ①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육부총장·대학원장·학부대학장·학(원)장·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장·첨단융합학부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처장과 교수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개정 2021. 5. 31., 2023. 8. 31., 2024. 9. 9.]
-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
 2. 강사의 신규채용, 재임용에 관한 사항
 3. 부총장, 학(원)장 등 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이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④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이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 ⑥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대학(원)에 인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공통교육위원회) ① 학사과정 공통교육과정과 공통교과목 교육, 온라인 교육과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통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3. 1., 2024. 9. 9.]

- ② 공통교육위원회는 교육부총장·학부대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장·학부대학 교무부학장·학부대학 학생부학장·학부대학 교육부학장·학부대학 기획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사과정이 설치된 대학의 학장 중 총장이 임명하여 총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된다. [개정 2021. 3. 1., 2024. 9. 9., 2025. 2. 28.]
- ③ 공통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3. 1., 2024. 9. 9.]
 1. 학부대학 발전계획 수립
 2. 기초교양교육 정책과 관련된 발전계획 수립
 3. 공통교육과정의 편성·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통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글쓰기교육, 온라인 교육과 교수·학습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사과정 기초교양교육 및 공통교육과정 등에 관한 주요 사항
- ④ 공통교육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9.]
- ⑤ 공통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제43조(학사운영위원회) ①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교무부처장·교육부처장·입학본부 부분부장·학부대학 교무부학장(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교무부학부장) 및 교육부학장·각 대학(원) 교무부학(원)장 및 첨단융합학부 교무부학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된다. [개정 2021. 3. 1., 2023. 8. 31., 2024. 9. 9.]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각급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편성·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료 및 학위수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④ 학사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항의 사항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4조(미래연구위원회) ① 교원의 학술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국가적 연구과제 등 미래 연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기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래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미래연구위원회는 연구부총장, 연구처장, 연구부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3.]

③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연구처장과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명을 포함하여 2명으로 한다.

④ 미래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구의 계획, 관리, 운영, 지원 및 연구윤리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2. 전지구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방향 제시
3. 본교의 연구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4. 국가의 미래 연구 수요 예측과 이를 반영한 연구진흥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산업계 연구개발 인력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미래가치 창출에 필요한 연구기획

⑤ 미래연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연구운영위원회) ① 교원의 학내외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운영위원회는 연구처장, 연구부처장, 각 대학(원)의 부학(원)장 또는 각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③ 연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 연구시설, 연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5. 대학, 연구소 간 연구 관련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연구소의 설치와 폐지,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 활동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연구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일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정보화위원회) ① 본교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② 정보화위원회는 연구부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시설관리국장·정보화본부장·중앙도서관장·대학혁신센터장·정보화본부 부분부장·학부대학 기획부학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8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이 된다. [개정 2021. 3. 1., 2024. 9. 9., 2025. 11. 18.]

③ 정보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종합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장·단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정보화 사업 및 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 ④ 정보화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7조(연구진실성위원회) ①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의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 연구진실성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7. 30.]

- ②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처장·교무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본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 개발, 평가의 시행방안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 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의2(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 ① 부설학교의 발전계획, 운영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는 교육부총장, 사범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부설학교진흥원장, 부설학교진흥원 부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총장이 임명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설학교진흥원장이 된다.
- ③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2. 17.]
 1. 학교발전계획 및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부설학교 직제 및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
 3. 부설학교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 부설학교 학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부설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④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8조의3(다양성위원회) ① 본교의 인적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양성평등 축진을 포함한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성위원회를 둔다.

- ② 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다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교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건의
 2. 본교의 다양성 관련 현황과 개선실적에 대한 연례보고서 발간

3. 본교의 다양성 관련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출
4.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④ 다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의4(대학혁신센터) ① 국가 고등교육 및 본교 혁신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센터를 둔다.

- ② 대학혁신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 ③ 대학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등교육 비전 및 발전방안 연구
 2. 본교 혁신 과제 및 정책 개발
 3. 국·공립대 협력 과제 개발
 4. 본교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5.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기초자료 제공
- ④ 대학혁신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48조의5(AI위원회) ① 본교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AI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AI(인공지능)위원회를 둔다.

- ② AI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3. 1., 2025. 12. 22.]
- ③ AI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교 AI 관련 연구·교육·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2. 본교 AI 관련 정책 수립 및 AI 관련 대정부 제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AI 생태계 조성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AI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30.]

제48조의6(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

[본조신설 2020. 2. 27., 삭제 2024. 9. 9.]

제48조의7(ESG위원회) ① 본교의 ESG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ESG위원회를 둔다.

- ② ESG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ESG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교 ESG 정책 수립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
 2. 본교 ESG 정책 연구 및 보고서 발간
 3. 본교 ESG 정책 추진 관련 주요 계획(대학운영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권고
 4. 그 밖에 ESG에 대한 사항
- ④ ESG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8.]

제48조의8(제도혁신위원회) ① 본교 운영체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총장 직속 특별위원회로 제도혁신위원회를 둔다.

- ② 제도혁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도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 고등교육체계 혁신을 선도하는 서울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2. 대학과 구성원의 자율성, 본교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대학 운영체계 혁신 방안 제 안

3. 불합리한 규제 해소, 미래지향적 조직 개편 및 행정 업무 혁신 방안 제안
4.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 방안 제안
5. 학교 발전계획 등의 실행 로드맵 제안 및 이행 과정 검토
6. 그 밖에 대학 운영 혁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안
- ④ 제도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1.]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사운영 일반

[본조신설 2015.12.30.]

제49조(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위과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6., 2021. 10. 22.]

② 학기는 학위과정에 따라 매 학년도 2개 학기 이상으로 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매 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22.]

제50조(수업일수) ①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5. 2. 6., 개정 2022. 1. 18.]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8.]

③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7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제51조(휴업일)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업일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2. 하계휴가·동계휴가 : 학사일정에 따름 [개정 2018. 6. 15.]
3. 임시휴업일 : 필요시 총장이 따로 정함.

제52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건축학과 건축학전공은 5년,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은 예과 2년, 전공교육 4년으로 하고, 약학대학은 6년으로 한다. [개정 2013. 4. 24., 2020. 2. 27.] [시행 2022. 3. 1.]

②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2년 이상(다만, 치의학대학원은 4년 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이상) [개정 2013. 4. 24., 2020. 3. 25., 2023. 8. 31.]
2. 박사과정 : 2년 이상
3. 학사·석사 연계과정 : 6년 이상 [개정 2020. 3. 25., 2022. 1. 3.]
4. 학사·석사통합과정 : 6년 이상(다만,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은 8년 이상) [개정 2013. 4. 24.]
5. 석사·박사통합과정 : 4년 이상
6.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 6년 이상 [개정 2023. 8. 31.]
7.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 8년 이상 [신설 2022. 1. 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3. 25.]

1. 석사과정 : 1년 [개정 2013. 4. 24., 2020. 3. 25.]
2. 박사과정 : 6개월 [개정 2013. 4. 24., 2020. 3. 25.]
3. 학사·석사 연계과정 : 1년 6개월 [신설 2020. 3. 25.][개정 2022. 1. 3.]
4. 학사·석사통합과정 : 1년 6개월 [개정 2020. 3. 25.]
5. 석사·박사통합과정 : 1년 [개정 2020. 3. 25.]
6.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 1년 6개월 [신설 2022. 1. 3.]
- ④ [삭제 2018. 6. 15.]

제53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6. 15.]

1. 학사과정 : 8년. 다만, 예과는 4년, 약학대학은 1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2020. 2. 27.][시행 2024. 3. 1.]
2. 석사과정 : 4년. 다만, 치의학대학원은 8년, 법학전문대학원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8. 6. 15., 2020. 3. 25., 2023. 8. 31.]
3. 박사과정 : 6년.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4. 학사·석사 연계과정 : 12년 [개정 2022. 1. 3.]
5. 학사·석사통합과정 : 12년. 다만,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각각 8년으로 한다. [개정 2013. 4. 24., 2018. 6. 15.]
6. 석사·박사통합과정 : 8년
7.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 12년[개정 2023. 8. 31.]
8.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 16년 [신설 2022. 1. 3.]
- ②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1. 유급을 적용하는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의 학사과정, 치의학대학원의 석사과정, 치의학대학원의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학생 [신설 2018. 6. 15., 개정 2023. 8. 31.]
2. 학사과정의 복수전공, 연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이수 학생. 이 경우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주전공을 복수로 이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5. 31., 2024. 9. 9.]
3. 대학원 융합전공이수 학생
4.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학생
5. 그 밖에 재학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학생
-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입학과 등록

제54조(입학시기) ① 학사과정의 입학시기는 학년도 초 4주(28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 4주(28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2. 6.]

1. 편입학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입학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입학
- ② 대학원과정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55조(학사과정 입학자격)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6조(석사과정 입학자격)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7조(박사과정 입학자격) 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사람
3.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58조(통합과정과 복합학위과정 입학자격) ① 학사·석사통합과정 입학자격은 제55조의 “학사과정 입학자격”으로 한다.

② 석사·박사통합과정과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은 제56조의 “석사과정 입학자격”으로 한다.[개정 2013. 4. 24., 2023. 8. 31.]

제59조(대학원과정 지원학부 또는 학과의 허용범위) ① 대학원과정에는 지원자의 출신학부·학과 이외의 학부·학과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에는 지원자격을 일정한 석사과정의 출신학부·학과 또는 전공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학부·학과별로 지원할 수 있는 출신학부·학과 또는 전공을 제한할 경우에는 모집 시에 그 내용을 공고한다.
- ③ 출신학부·학과의 범위는 부전공 학부·학과를 포함한다.

제60조(입학전형) ① 입학생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 ②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 시에 공고한다.
- ③ 입학고사의 관리·시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한다.

제61조(학사과정의 편입학) ① 학사과정의 편입학은 정원내편입학과 정원외편입학으로 구분한다.

- ② 정원내편입학 학년은 3학년(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1학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년의 신입생 선발 시 편입학을 목적으로 배정된 정원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 ③ 정원외편입학 학년은 3학년(의과대학 의학과·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1학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94조의 위탁생의 경우에는 편입학 학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편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삭제 2020. 2. 27.] [시행 2024. 3. 1.]

제62조(대학원과정의 편입학) ① 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통합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편입학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② 석사·박사통합과정 편입학 자격은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 분야의 석사과정 또는 석사·박사통합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 ③ 편입학 시행방법, 학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을 정원내 편입학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할 수 있다.
 1. 정원내 편입학 학년은 2학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년의 신입생 선발시 배정 범위에서 선발한다.
 2. 편입학 학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30학점 이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3조(정원외 입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특수 교육대상자, 농·어촌지역의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입학을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전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과 그 밖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이 별도로 정한 의무이수학점을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4조의2(입학허가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신설 2020. 12. 24.]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절 학적관리

제65조 (전과(부)) ① 학사과정 2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은 전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5.] [시행 2024. 3. 1.]

② 제1항의 전과(부)의 전출 및 전입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6. 15., 2020. 2. 27.] [시행 2024. 3. 1.]

③ 폐지된 모집단위 재적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과(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5.]

④ [삭제 2020. 2. 27.] [시행 2024. 3. 1.]

⑤ [삭제 2020. 2. 27.] [시행 2024. 3. 1.]

⑥ 전과(부)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와 전과(부)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과(부)의 지원가능 시기는 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전출 및 전입 인원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범대학장이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8.]

제65조의2(대학원생의 소속 변경) 대학원 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타 학과(부)·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도교수가 소속 변경을 한 경우
2. 소속 학과(부)·전공이 분리, 통합, 개편 등이 된 경우
3. 협동과정 등 신설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학생의 동의를 얻어 참여 학과(부)·전공에서 요청한 경우

[신설 2022. 1. 18.]

제66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신청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2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이행, 창업, 임신·출산, 육아 및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강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2018. 6. 15.]

③ 휴학기간은 방학을 포함하며 1회에 1년 이내의 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연 단위 휴학기간은 매 학년도 3개 학기 이상을 운영하는 학위과정에 적용된다. 다만,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권고휴학은

4개 학기 또는 2년까지, 군휴학은 의무복무기간이 포함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6. 15., 2021. 10. 22.]

④ 휴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19., 2018. 6. 15.]

1. 학사과정 : 6개 학기 또는 3년. 다만, 약학대학은 8개 학기, 예과과정 및 편입학한 경우에는 각각 3개 학기로 하되, 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로 편입학한 경우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전과한 경우는 6개 학기로 한다.[개정 2018. 6. 15., 2020. 2. 27.] [시행 2022. 3. 1.][개정 2021. 10. 22.]
2. 석사과정 : 4개 학기 또는 2년. 다만, 치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은 6개 학기로 한다.[개정 2013. 4. 24., 2018. 6. 15.][개정 2020. 3. 25., 개정 2021. 10. 22., 2023. 8. 31.]
3. 박사과정 : 6개 학기 또는 3년.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4개 학기로 한다. [개정 2018. 6. 15., 개정 2021. 10. 22.]
4. 학사·석사통합과정 : 10개 학기 또는 5년. 다만,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각각 6개 학기로 한다. [신설 2018. 6. 15.][개정 2021. 10. 22.]
5. 석사·박사통합과정 : 8개 학기 또는 4년[개정 2018. 6. 15., 개정 2021. 10. 22.]
6.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 10개 학기[개정 2018. 6. 15., 2023. 8. 31.]

⑤ 다음 각 호의 휴학기간은 제4항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군휴학 : 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다만, 종강일 후 입영 또는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휴학 학기로 본다.
2. 창업휴학 : 4개 학기 또는 2년[개정 2023. 2. 21.]
3. 임신·출산휴학 : 2개 학기 또는 1년
4. 육아휴학 : 4개 학기 또는 2년
5. 질병휴학 : 4개 학기 또는 2년
6. 권고휴학 : 4개 학기 또는 2년

[신설 2018. 6. 15.][개정 2021. 10. 22.]

⑥ [삭제 2018. 6. 15.]

⑦ [삭제 2018. 6. 15.]

제67조(복학)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종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 전에 복학을 신청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휴학한 학생이 학기 개시 후에 전역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② [삭제 2018. 6. 15.]

제68조(자퇴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15.]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된다. [개정 2025. 8. 8.]

1. 휴학허가(휴학 연장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제53조의 재학연한 내에 학사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대학원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3. 제66조제4항의 휴학연한을 초과한 경우
4. 학생이 제1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권고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5. 사망한 경우

[신설 2018. 6. 15.]

제69조(복적 및 재입학) ① 제6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적된 학생이 1년 이내에 복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5.]

②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③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자퇴·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복적 또는 재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복적 및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 6. 15.]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1.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사제적되거나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급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2. 제53조의 재학연한이 만료된 학생
3. 제107조제3항에 따라 징계 제명된 학생
4. 제110조제3항에 따라 학사 제명된 학생
5. 제111조제3항에 따라 유급 제명된 학생

[개정 2018. 6. 15.]

⑤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한다.[개정 2018. 6. 15.]

⑥ 복적하거나 재입학한 학생의 이미 이수한 학점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한다. [개정 2018. 6. 15.]

제70조(이중학적 금지) 본교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4절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제7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 등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2조(수업연한 초과자 수강신청)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5.]

② [삭제 2018. 6. 15.]

제73조(교과목 구분)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중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교과과정에 따른다.

제74조(학점) ①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9조제2항의 공통교과목 및 대학원과정의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한 이수단위, 이수기간, 이수방법 등은 교과과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6. 11.]

③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 수업시간 외의 학습시간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일 때 또는 교과과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학별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학사·석사 연계과정 및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이수자는 제1항의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제76조(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7조(전공이수)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대학장은 다음 각호의 전공이수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복수전공
2. 둘 이상의 학과(부)·전공이 연합하여 별도의 전공을 설치하는 연합전공
3. 학과(부)가 다른 학과(부)의 전공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하는 연계전공
4.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설계전공
5.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부전공

② 대학원 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2.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협동과정을 포함한 둘 이상의 학과(부) 및 협동과정이 융합하여 별도의 전공을 설치하는 융합전공

③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학생설계전공이나 타 대학 소속 학과(부)의 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간호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소속 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24. 9. 9.]

④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전공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7조의2(교과인증과정 이수) ①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9학점 이상 15학점 이내로 구성된 교과과정(이하 "교과인증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이수내역을 인증받을 수 있다.

② 교과인증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3.]

제78조(과정 이수 학점 등) ①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교양과목 36학점 이상, 전공과목 3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제약학과의 학사과정은 전공과목을 주로 과하며, 의학과·수의학과 해당 예과에서는 교양과목을 주로 과하되 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8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② 학사과정의 복수전공, 연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과(부)·전공에서 정한 전공교과목 39학점 이상을, 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는 해당 전공에서 정한 교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31.]

③ 대학원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 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30학점 미만인 학과(부)·전공이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시험과 학위논문을 실적심사로 대체하여 시행하는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2022. 7. 25.]

1.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 : 24학점

나. 박사과정 : 36학점

다. 석사·박사통합과정 : 60학점 [신설 2018. 6. 15.]

2. 전문대학원

가.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 석사과정 30학점 [개정 2018. 6. 15.]

나. 국제대학원 : 석사과정 30학점, 박사과정 45학점 [개정 2018. 12. 7., 2023. 8. 31.]

다. 경영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45학점 [개정 2013. 4. 24., 2018. 6. 15., 2020. 3. 25.]

라. 치의학대학원 : 석사과정 165학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275학점. 이 경우 전문석사과정 진입을 위한 학점은 110학점만 포함한다. [개정 2018. 6. 15.]

마.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0학점, 박사과정 24학점

바.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사·박사통합과정 60학점 [개정 2025. 2. 28.]

사. 국제농업기술대학원 : 석사과정 33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사·박사통합과정 66학점 [개정 2021. 3. 1., 2025. 2. 28.]

아. 공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36학점 [신설 2015. 10. 13.]

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 석사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사·박사통합과정 60학점 [개정 2019. 12. 26., 2022. 10. 21., 2025. 2. 28.]

④ 학사과정 졸업 및 대학원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제79조(타 학부·학과 교과목의 이수)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부)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② 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8. 6. 15.]

제81조(선수과목) 대학원과정에서 사전에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과과정에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2조(타 대학 등 이수 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6.]

②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사과정 1학년 학생이 본교 입학 전에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3조(취득학점의 인정) ① 학사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복수전공·연합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부전공 포함)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원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치의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2.0 이상이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5절 시험과 성적

제84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중간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85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3	B+	3.3	C+	2.3	D+	1.3	F	0
A0	4.0	B0	3.0	C0	2.0	D0	1.0	-	-
A-	3.7	B-	2.7	C-	1.7	D-	0.7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평점을 부여하지 않고 급락만 구분하여 급제는 "S"로, 낙제는 "U"로 표시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한해서는 급제를 "S"와 "S+"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③ 각 교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6조(추가시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추가시험원을 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절 수료와 졸업

제87조(학사과정의 학년수료) ① 학사과정의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1. 1학년 : 33학점 [개정 2018. 6. 15.]
2. 2학년 : 65학점 [개정 2015. 2. 6., 2018. 6. 15.]
3. 3학년 : 98학점 [개정 2018. 6. 15.]
4. 4학년 : 130학점 [개정 2018. 6. 15.]
5. 5학년 : 160학점 [개정 2018. 6. 15.]
6. 6학년 : 211학점 [개정 2020. 2. 27.] [시행 2022. 3. 1.]

② 학사과정에서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8. 6. 15.]

제88조(학사과정의 졸업) ① 재학생으로 제52조, 제78조 및 제83조에 따라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대학별로 정한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 졸업 희망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8. 6. 15.]

② 졸업증서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학사·석사 연계과정 및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이수자에게는 제1항의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④ 학사·석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3. 4. 24.]

⑤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대학별로 정한 전공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대학에서 인정하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4. 9. 9.]

제89조(대학원 과정의 졸업) ①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52조, 제78조 및 제83조에 따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과(부)·전공의 경우 종합시험과 학위논문을 실적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0. 13., 2018. 6. 15., 2022. 7. 25.]

②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52조, 제78조 및 제83조에 따라 박사과정 또는 석사·박사 통합과정이나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8. 6. 15., 2023. 8. 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제1항의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학생 [개정 2018. 6. 15.]
2.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
3. 치의학대학원의 복합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 [개정 2016. 9. 6.]
- ④ 학위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 제90조(학위수여)** ① 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명예박사 4종으로 하고,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제14조제2항의 전문대학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학위를 수여하되, 필요한 경우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절 특별학점취득·계절수업·공개강좌 등

- 제91조(특별학점 취득)** ① 특별학점 취득을 위하여 교양과목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양과목학점취득 특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2조(계절수업 등)** ① 하계휴가 또는 동계휴가 기간 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따로 정한다.
 ②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3조(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① 본교에 학생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공개강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본교는 학내 구성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과정을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2. 28.]

제8절 위탁생·특별수강생 등

- 제94조(위탁생)** ① 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이 있을 때에는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에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입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이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위탁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5조(특별수강생)** ① 각급 학위과정에 특별수강생의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96조(교류수학생)** 본교와 국내외 대학간 학생의 교류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7조(연수연구원)**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연수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연수연구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98조(대학원연구생)**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등록을 필한 사람에게 대학원연구생의 자격을 준다.
 ② 대학원연구생의 자격·신분·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학생

제1절 학생활동

제99조(학생회 등) ① 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0조(학생 생활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의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상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100조의2(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 등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1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2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장학

제10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감면은 해당 학년도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이어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04조(장학금) 학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5조(학비보조 등) ① 간호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 중 학생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3절 규율과 상벌

제106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7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명으로 한다.

④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징계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8조(학사경고) ① 학사과정(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을 포함한다)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에 미달되거나 3교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및 유급을 적용하는 의과대학 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약학대학 학생은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6. 15., 2020. 2. 27.] [시행 2022. 3. 1.]

②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25 이하이거나 2개 교과목 이상의 성적이 "F" 또는 "U"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이 경우 성적산출시 학사과정과 외국어 진행강의 및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제외한다.[개정 2015. 2. 6., 2020. 2. 27., 2023. 11. 15.]

③ 학(원)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제한하는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할 수 있는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연속하여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제109조(유급)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유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6. 15.]

1. 학사과정 : 의과대학 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약학대학 [신설 2018. 6. 15.] [개정 2020. 2. 27.] [시행 2022. 3. 1.]

2. 석사과정 : 치의학대학원(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제외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2018. 6. 15.]

제110조(학사제적·학사제명)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제108조의 학사경고를 4회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학사제적한다. 다만, 해당 학생이 소속된 대학(원)의 학(원)장은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학사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결정할 수 있으며 권고휴학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5., 2025. 8. 8.]

② 권고휴학 후 복학한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적한다.

③ 학사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제108조의 학사경고 2회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명한다.

④ [삭제 2025. 8. 8.]

제111조(유급제적·유급제명) ① 제109조의 유급을 적용하는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동일 학년에서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재학연한 중 3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연한 중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한다. 다만, 해당 학생이 소속된 대학(원)의 학(원)장은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유급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결정할 수 있으며 권고휴학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5., 2025. 8. 8.]

② 권고휴학 후 복학한 학생이 다시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한다.

③ 유급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다시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명한다.

제5장 등록금

제112조(등록금 납부)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6. 15.]

제113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직원 3명, 학생 3명, 관련 전문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2명과 학부모 또는 동문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 1명은 학교와 학

생대표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4조(복학자의 등록금) 복학이 허가된 학생은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5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16조(실험실습비 등) 실험·실습·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7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학기단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의 등록금의 반환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18. 6. 15.]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의 반환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입학일 전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6장 학칙개정

제118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교수회가 발의하고, 총장이 7일 이상 공고한 후 학사위원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공포한다.

제119조(규정 제정 및 개정) 이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7일 이상 공고한 후 학사위원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 공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정관, 학칙 등 상위 규범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2. 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의 개정
3.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부칙 <제2640호,2025.12.2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